

따뜻한 경북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5. 2. 1.



경상북도교육청

2025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p2. 라. 임용 상한 연령
 - '단, 단기간 결원(1개월 미만 강사)의 경우 65세' **변경**
 -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 **변경 (65세 → 70세)**
- p3. 바. 임용 시 구비 서류
 - 1) 응시자 제출서류
 - ‘지원 시 기초심사자료 이외 서류제출은 최소화, 신규채용 예정자에게 기타 채용에 관한 서류 제출 권장, 학교채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시에 요청 가능’ **추가 변경**
 - ‘※ 서류 심사 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교(원) 성적증명서 등은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원) 성적증명서는 최종합격 후 호봉획정시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확인하여야 할 때만 제출’ **추가**
 - 최종합격자
 - ‘· 임용기관: 마약류 검사 회보서 **삭제**, 상피제확인’ **추가**
- p5. 아. 채용의 제한
 - ‘9)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임용될 수 없음(상피제)’ **추가**
- p11. 라. 임용절차
 - ‘채용공고: 공고일 제외 3일 이상(**공휴일 포함**) 공고’ **추가**
 - ‘채용확정: 발령대장 정리, 기간제교원 평가 및 관리’ **추가**
- p12. 바. 인사관리
 - 1) 근무실적 평가
 - ‘대상: 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변경**
- p15. 자. 임용 시 유의사항 및 우대
 - ‘3) 기간제교원의 업무량 및 배분의 적합성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할 수 있음’ **추가**
- p17. 아. 보수 - 3일 이내 결원 시간강사: 시간당 **25,000원**
- p21. 5. 휴가
 - 1) 연가
 -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변경**
- | 계약 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최대 11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 17일 |

 - ‘계약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일괄 부여, 계약시작일부터 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추가**
- p24. 라. 육아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의 변경 내용’ **추가**
- p33.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추가**
- p50.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2. 적용 시기: 2025. 2. 1.

목 차

I. 일반 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제도 운영의 목적	1
3. 계약제교원 임용 기본사항	2
4. 관련 규정	8
II.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10
1. 기간제교원	10
2. 강사	16
3. 산학겸임교사	18
4. 명예교사	19
III.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20
1. 당직 및 비상 근무	20
2. 출장	20
3. 겸임 및 순회 근무	20
4. 근무시간	20
5. 휴가	21
6. 육아휴직	22
7.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25
8. 정치활동 금지	25
9. 불체포 특권	25
10. 인력풀제 운영	25
11. 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26
12. 각종 연수 참가	26
13. 수업결손 방지	26
14.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26
15. 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26
IV. 행정 사항	27

V. 참고 자료	28
1.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자료	28
<참고 자료 1> 계약제교원 채용공고 예시	28
<참고 자료 2> 계약제교원 지원서 예시	31
<참고 자료 3> 계약제교원 자기소개서 예시	32
<참고 자료 4> 계약제교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3
<참고 자료 5> 계약제교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35
<참고 자료 6>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예시	36
<참고 자료 7> 계약제교원(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예시	39
<참고 자료 8> 계약제교원 발령문안 예시	41
<참고 자료 9>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자체 점검표 예시	42
<참고 자료 10> 마약류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	43
2. 기간제교원 각종 서식	47
<서식 1> 근무실적평가 결과 활용 동의서	47
<서식 2>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 예시	48
<서식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49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0
<서식 5>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보고 서식	51
<서식 6-1> 서약서 예시 1	52
<서식 6-2> 서약서 예시 2	53
<서식 7-1> 기간제교원 육아휴직원	54
<서식 7-2>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복직원	55
<서식 7-3>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56
<서식 8-1> 서류심사 평가표 예시	58
<서식 8-2> 심사위원 서약서 예시	59
<서식 8-3>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예시	60
<서식 8-4> 수업실연 평가표 예시	61
<서식 8-5> 면접 질문지 예시	62
<서식 8-6> 면접 심사 점수 집계표 예시	63
<서식 9>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합산 신청서	64
<서식 10>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65
<서식 11> 중도 계약 해지[해고] 확인서	69
3. 계약제교원 4세대 나이스 업무 처리	70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요약)

구 분	계약제교원					강사 등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강 사	
	기간제교원				강사 등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강 사				
임용	사유	1월 이 상 결원 보충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퇴직 교육공무원 대체 임용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 원아교육 담당	① 1일 이상 1월 미만의 교원 결원 시 (3일 이내 결원 - 학교회계 채용) ②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③ 특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학교운영 위 원회(또는 학 칙)에서 정 한 기준	담당과목관련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 무 등(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①, ②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 ③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임용권	학 교(원)장 (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교육장)			학 교(원)장 (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교육장)		
	기간	·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 (3년까지 연장 가능/동일교 총 4년 임용 가능) · 임용대기자 부족으로 정규교원 대신 임용하는 결원 보충 기간제 : 1년으로 임용			· 1개월 미만의 교원 결원 발생 시 임용 · 사업별 계획에 의해 시간제 강사를 학기 단위로 임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기준에 의함		
	상한 연령	62세(1차 공고 이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0세)			65세(1차 공고 이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0세)		
	정원 관리	· 정원 내에서 임명 · 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의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원외로 임명할 수 있음.			본문 참조		
	공정성 확보	· 6개월 이상 임용 시 도교육청홈페이지 채용 공고 의무화 (공고일 제외 3일 이상) ·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본문 참조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산정하되 퇴직교원이었던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 수령자(일시금 수령자 포함) 및 명예퇴직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계약기간 중 고정급으로 함			무보수 자원 봉사 원칙 (설비 성격의 여비지급 가능)	· 4일 이상 전일제 강사: 규정에 의해 월보수액 일할지급 · 3일이내 시간강사 : 시간당 25,000원 - 초과하는 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 사료 지급 단기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 (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 산학겸임교사 :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처우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 다만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함			· 4일 이상 1월미만 전일제 강사: 일할계산 · 3일 이내의 강사: 미지급		
	4대 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복무 조건	신분증 교부	· 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		
	호봉	·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불가(당초 호봉 고정, 단 상위 자격 취득 시 봉급 재산정) · 연장계약, 재계약 시 호봉 재획정 가능 · 임용권자의 과실로 인한 호봉정정만 가능			-	-	·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불가 (당초 호봉 고정), 시간강사 별도 · 임용권자의 과실로 인한 호봉 정정만 가능, 시간강사 별도
	경력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조
복무 조건	복무 조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 기준 참고 (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 기간제교원에 준함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경상북도교육청

I.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가.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
- 나.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을 총칭함
- 다.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임
- 라.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초·중등 교육법 제22조)은 교원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 스포츠 강사, 고교학점제 관련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학교폭력전담교사 대체 강사, 수석교사 지원 강사, 영어회화 전담 강사, 늘봄학교 지원 기간제 교원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2 제도 운영의 목적

-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 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 나.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 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 시수 불균형 해소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수업 부담 경감
(반드시 근거 사업이 있어야 하며,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2) 소규모 학교의 표시과목 불일치 해소

다. 교사 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사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계약제교원 임용 기본사항

가. 대상: 공립 유·초·중등학교·**교육지원청** 계약제교원(사립학교는 준용)

나. 임용권자: **학교(원)장(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교육장)**(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다. 임용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참고자료 5, 6>)에 따라 문서로 계약 체결

※ 학교 사정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라. 임용 상한 연령: **교육공무원 정년 만 62세**(임용일 기준 만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 단기간 결원(1개월 미만 강사)의 경우 만 65세

< 예시 >

- 1963년 5월 4일 출생자(2025. 5. 4. 만 62세)
 - 2025년 5월 4일부터 신규임용 불가
 - 2025년 5월 4일 이전 임용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계약 유효(**학기말**)
 - (계약기간) 2025년 5월 6일 ~ 2025년 8월 31일(X)
 - (계약기간)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X) ⇒ 2025년 8월 31일 계약 만료
 - (계약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6월 20일(O) ⇒ 계약종료 후 신규 및 재계약 불가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 말**까지 임용 가능함)

마.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 1)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상시 근로자 수를 전체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임

- 2) 학교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4% 이상)이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학교 자체 실정을 고려한 대책 수립·시행

바. 임용 시 구비 서류

구 분	필요 서류	
	본인	임용기관
지원자 공통	1. 지원서 <참고자료2> 2. 자기소개서 <참고자료3>	
서류전형 합격자	1.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교원자격증소지 불문 2. 최종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최종합격자	1.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성범죄, 아동학대)<서식3>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4> 3.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4.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확인서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제출)** 5.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6.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서식9> 7. 서약서 <서식5-1> 8.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해당자) <서식1>	1. 호봉획정표 (획정을 위한 증명서) 2.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강사는 1개월 이상 임용 시)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경력조회 회보서 4. 발령대장 정리 *상피제 확인 *계약제교원 채용 후 나이스 「계약직인사기록」에 「퇴직 예정 일자」 입력 및 계약해지 시 「퇴직」 처리
해당자 추가 제출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 마약류 관련 서류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참고자료 9>		
** 신체검사 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실시로 간주, <u>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u> <u>검사)</u> 은 최초 1회만 실시 이후 채용 계약 시 추가 검진 불필요(학교보관)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정 기한 내 유효 (판정일로부터 1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퇴직한 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교원정책과-2841(2023. 4. 19.))		
※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매년 제출하지 아니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로 대체 가능		
※ 한 달 미만의 계약제 교원(강사)은 「일반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체검사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학교지원과-5310(2022. 3. 25.))		

1)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 지원 시 **기초심사자료** 이외 서류 제출은 **최소화**. 신규채용 예정자에게 기타 채용 관련 서류 제출 권장, 학교채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시에 요청 가능

※ 서류 심사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원) 성적증명서 등은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원) 성적증명서는 **최종합격 후 호봉획정시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확인하여야 할 때만 제출**

-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금지: 계약 전 공고 및 모집 단계에서 채용원서(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등

- 응시 서류 접수 방법: 우편, e-mail,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 기초심사자료를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2) 서류 징구 간소화

- 경상북도 신규교사 임용 대기자: 교육감 확인서(임용대기 확인서)로 대체

- 퇴직교원: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단,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반드시 실시

- 기간제교원 경력자: 기존 제출서류 활용 가능

☞ 직전 임용 학교에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다음 학교로 이관(기록 유지)

사. 결격사유 · 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1) 대상

대상	종류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기간제교원		○	○	○
산학겸임교사 · 명예교사		○	○	○
강사	(1개월 이상 임용)	○	○	○

※ **1개월 미만 임용 강사는 서약서(<서식5-2>)**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음을 본인이 확인

※ **특수교사 임용 시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에 관한 교육복지과 공문 참조하여 경력조회 추가 실시(교육복지과-1692(2022. 1. 28.))**

2) 조회 방법: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시스템)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안내, 중등교육과-17273(2020. 8. 12.) 참고]

※ 관할 지방경찰청에 공문 발송 범죄경력 조회 금지



3)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임용 기간 종료 후 경력단절 없이 이어서 다른 학교에 임용되는 경우 결격사유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생략 가능(1년 경과 시 재실시)
- 임용 기간 종료 후 경력단절 없이 동일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

아. 채용의 제한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금품수수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는 자
-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단, 1차 공개채용 모집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가능)

- 7)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성비위 관련으로 계약해지된 자
-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상피제)

자.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1) 해고 예고 및 계약해지 통지

- 임용권자(학교장)는 휴직, 파견, 휴가 등 해당교원의 조기복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30일 전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중도 계약 해지 시 5일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10>)
 - ▶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서면 통지하되, 30일 전 예고는 생략 가능함
 - ▶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 계약제교원의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제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전에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함

2) 해고 예고 미이행 시: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3) 계약해지 사유(계약서에 명시)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도 계약 해지**)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게 된 때
- 기타 사회통념상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복무 불량 및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또는 행정조치 (성비위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결정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을 것)

※ 성비위 계약해지 시 교육(지원)청 보고 후 「근무활동평가서」에 작성·보관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성비위 기간제교사 대장 기록 및 보관
- 나이스 「계약직인사기록」 - 「비고」에 성비위 계약해지 사유 기록
(예) 2025. 5. 11. 성추행으로 계약해지

〈유의 사항〉

○ 즉시 계약 해지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차.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종류	자 격	보 험 료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가입가능 <p>※ 1월 이내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되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가능 <p>※ 1월을 초과하여 사역 결의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부분가입 <p>※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보수총액 × 보험료율(1.8%)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이상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당연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액 사업주 부담

※ 4대 보험 담당기관 (※ 보험료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카.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한 계속 근무년수(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지급

-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계속 근로연수)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계속 근로기간이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을 합산(근무 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
-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한 기간을 말함
-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 근로년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구분	월정임금	비월정임금
호봉제	<p>본봉</p> <p>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정액급식비</p>	<p>정근수당</p> <p>명절휴가비</p> <p>성과상여금</p>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제외

-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할 것)
 - ※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을 일정 기간 경과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퇴직금 문제를 사전 협의하여 논란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 퇴직적립금의 관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 연도마다 퇴직금 산정 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
 - ※ 퇴직금은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 유·초·중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10일까지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요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근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9조)
- 타. 연금 지급: 계약제교원은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음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 정지)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함

4

관련 규정

-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마.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바.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 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 서류)
- 아.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추진(교원정책과-3563, 2012. 3. 30.)
- 자.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제70호)
- 차.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지원과-1886, 2013. 2. 8.)
- 카.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및 등록 관련 개선사항 안내(교원지원과-4791, 2014. 4. 2.)
- 타. 계약제교원에 대한 신원조사 대상 조정 알림(교원지원과-7181, 2014. 6. 2.)
- 파.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국가인원위원회 사회제도개선 과-298, 2017. 6. 15.)
- 하. 3개월 초과 임용 기간제교원 관련 결격 사유 조회 업무처리 안내(교원정책과

-7011, 2017. 10. 31.)

- 거.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점 차별 권리(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총괄과-5652, 2019. 11. 1.)
- 너.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원정책과-9137, 2021. 11. 24.)
- 더.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제도 개선 권리(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20. 4. 23.)
- 러.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교원정책과-357, 2022. 1. 14.)
- 머.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 소지자 계약제교원 임용 개정(유초등교육과-3534, 2022. 2. 23.)
- 버. 한 달 미만의 계약제교원(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변경(학교지원과-5310, 2022. 3. 25.)
- 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431호)(2023. 1. 20. 시행)
- 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교원정책과-2841, 2023. 4. 19.)
- 저. 계약제교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안내(교원정책과-2819, 2023. 4. 19.)

II.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1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 1) 1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 임용(제1항제1호, 제2호)
 - 가)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나)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2) 정원 외로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 폐지로 인한 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 **스포츠 강사, 고교학점제 관련 강사, 교과교실제 관련 강사, 학교폭력전담교사 대체 강사, 수석교사 지원 강사, 영어 회화전문강사 늘봄학교 지원 기간제 교원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 3)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제32조제1항제4호)
 - 퇴직 당시 국·공립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 연구관, 교육연구사)에 있었던 자의 임용
- 4)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2조제1항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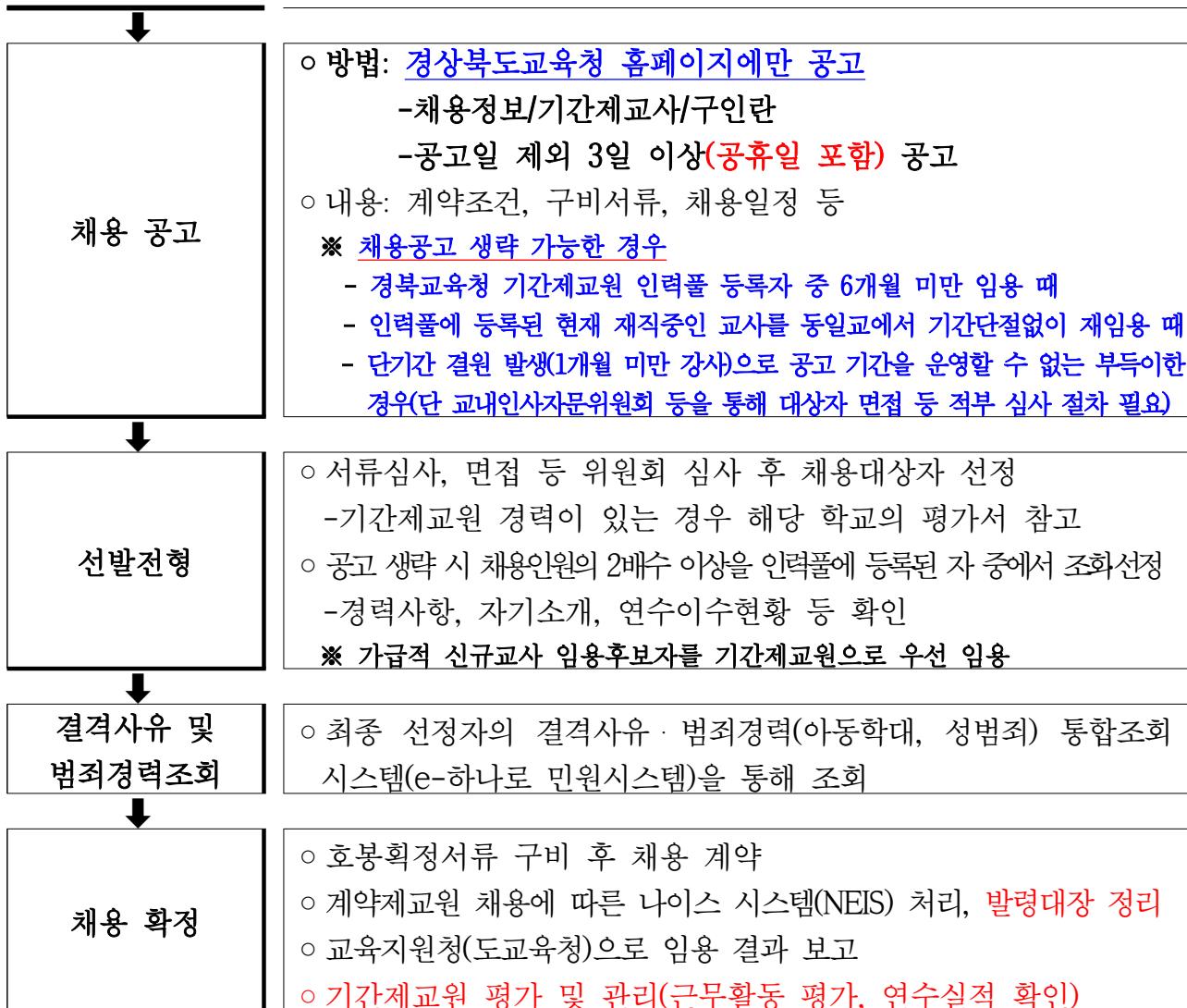
나.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신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 2)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
- 5)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직위(기간제교원)와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라. 임용 절차

주요 내용	추진 내용
결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曆算)이상 결원 발생(기간제교원) ※ 결원으로 인한 강사 채용 시에도 본 절차 준용
임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교원 임용계획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일,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등 전체 일정 고려- 채용 및 심사 방법, 채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1) 우수한 기간제교원의 확보와 임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력풀제 운영
- 2) 소규모 학교 표시과목 불일치 해소,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순회 근무, 단 기간 결원 보충 등 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3) 6개월 이상 결원 대체 기간제교원 채용 때는 채용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채용정보/ 기간제교사/ 구인란에만 공고함

마. 임용 기간

- 1) 정규 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임용함
- 2) 6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도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
 ※ 3월 계약과 같이 9.1. 또는 9.2.이 휴일인 경우에도 9.1.자로 계약
- 3)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 기간은 조정이 가능함
- 4)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하는 경우(계약해지 30일 전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 실시(해지 후 5일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10>)

- 5) **연장계약은 동일 결원 교원에 대한 결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근무자와 재계약 가능.** 계약서 재작성 및 호봉재획정

※ 1차 공고 이후 채용된 계약제 교원(퇴직자, 학교급 불일치, 유사과목)의 경우 연장 계약 불가

- 6) 1개월 이상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총 4년까지 임용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 4년의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다시 신규채용절차(공개전형 채용)를 거쳐 같은 학교에 다시 임용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2012.2.3.)

바. 인사 관리

- 1) 근무실적 평가

- 평가자: 학교장

- 대상: 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계약 시 평가 동의서<서식1>를 받음)

※ 3개월 미만 채용된 기간제 교원은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평가(계약서에 평가 실시 내용 기재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함)

- 평가내용: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업무수행능력 및 학생생활지도, 연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인사자문위원회 등 활용 가능)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 결과활용: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고, 인력풀 등록자는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관리하여 기간제교원 재임용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유의 사항〉

- 부정 채용,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 특히 성범죄(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교원의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 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및 근무실적평가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인사기록

-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은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NEIS 인사기록(교원인사/계약직 교원)으로 등록·관리

- 나이스 교원인사의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적극 활용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NEIS 인사기록 전송방법: 등록(타시도)→총괄서버 퇴직교원 찾기→저장→요청

- 기타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함

◆ <NEIS 사용 유의 사항>

-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직(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강사(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는 NEIS 교육공무직 등에서 등록 · 관리
 - 한 기관(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 등록 전 반드시 기간제교원을 조회하여 동일인이 없을 경우 등록
- ※ 이미 인사기록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전 경력은 NEIS 인사기록 경력란에 기재

3) 연수이수 의무화

- 대상: 3개월 이상 임용 기간제교원(신규임용고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무연수를 마친 자는 제외 가능)

- 연수내용

○ 필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법정의무교육(원격)」 이수 의무화

○ 권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새내기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프로젝트(원격)」(1월~11월) 및 교과 또는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 이수

○ 계약 내용으로 명시: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 계약서 명시: 제14조(연수)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개설하는 「법정의무교육(원격)」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연수실적관리

○ 「법정의무교육(원격)」 연수 이수증은 개인 보관 및 사본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제출: 인력풀에 등재(재임용 시 면제: 2년 유효)

○ 학교 인사담당자(교감)에게 제출: 연수 이수증 사본을 근무실적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사. 보수

1) 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 유·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 (봉급의 제한)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함

①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 연금지급자 범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국민연금 미포함)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 하였을 때

③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고정급 지급의 변경 사유(「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2022. 1. 시행))

-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봉급 재산정하여 고정급 지급(호봉만 1호봉 승급)
- 계약 기간 내에는 호봉정정 · 재획정 및 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한 호봉으로 고정되므로 호봉산정 때 정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호봉의 정정은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만 정정 및 소급 가능하며,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증명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정정 불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2)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 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와 교육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함

※ 계약기간 중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변경 불가

-성과상여금

- 매년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거 지급

※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근무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지급함(「실제 근무한 기간」 이란 기관 및 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타 · 시도 근무 기간도 적용)도 포함함. 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및 학교(유치원)에서의 「실제 근무한 기간」은 증빙서류(근무 확인서 등)를 통해 반드시 확인

※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교원(공무원, 군인 포함)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호봉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근무연수를 5년만 인정하여 지급

〈정근수당 지급방법〉

$$\text{지급액} = \text{근무연수*} \text{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 (개월)}}{6(\text{개월})}$$

- 1월 : 전년도 7.1. ~ 12.31.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 7월 : 1.1. ~ 6.30.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근무연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호봉경력

아. 처우

- 1) 기간제교원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 2)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계약제교원은 교통비 지급, 사택 제공, 재계약 시 우선 임용 등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함
- 3) 맞춤형복지비: 경상북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의함

자. 임용 시 유의 사항 및 우대

- 1)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 부여가 필요하고 업무분장 등은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배정 지양
 -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한 업무 배정 지양
 -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 등이 승계(교육부 교원정책과-1069, 2016. 2. 17.)
- 2) 기간제교원에게 부득이 담임을 배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은 자로 하며 업무숙련도 등을 고려하고, 특히, 3개월 미만 및 학기 중 단기 계약 기간제교원의 담임 배정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
- 3) **기간제교원의 업무량 및 배분의 적합성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할 수 있음**
- 4) 표시과목 불일치 교과 임용불가: 담당(임용)과목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과목불일치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 소지자 계약제교원 임용(유초등교육과-3534(2022.2.23.))

구분	내용
대상	초등 교과전담, 특수, 사서(단, 1개월 이상 결원 교사의 표시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채용절차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용(회의록 구비)
기타	호봉 경력 8할 인정, 승진 및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경력 산정 불인정 , 이 외 사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 중등의 경우 **1차 공고 후 해당 과목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는 경우(교육과정 운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등등 학교급 중 자격표시과목이 유사한(물리/공통과학→화학, 일반사회→지리) 교원자격 소지자 임용할 수 있음(회의록 구비)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연장계약 불가, 결원 교사의 표시과목과 동일 과목으로 재 공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가점 대상이 됨에 따라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임용 시 국가유공자 가점(만점의 5~10% 가점함(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2 강사

가. 임용 사유

- 1) 1개월 미만의 결원보충(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1항)
- 정규교원 결원 발생(특별휴가, 공가, 병가, 연가, 출장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 2) 정원 외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교원자격증 소지자)
-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권자: 학교장

다. 신분

- 1)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2) 결원 발생으로 인한 정규 교사의 직무를 대행 또는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 목을 일시적으로 담당

라.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마. 임용기간: 교원 결원 발생 시 1개월 미만 임용. 다만, 사업별 계획에 의해 시간제 강사를 학기 단위로 임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 기준에 의함

바. 임용방법

- 1) 1개월 미만 결원 보충 강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4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임용 학교(원)장이 임명,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에서 보수 지급
- 임명 후 교육(지원)청으로 임용 결과 보고
- 2) 3일 이하의 임용 시 학교(유치원)에서 수당 지급
- 3)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 담당 강사
- 1월 미만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수업이 있는 기간에만 임용하되, 계약

기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임용함

사. 경력: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조
아. 보수

- 1) 시간당 강사 수당 및 대체 강사 수당은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실제로 수업한 시간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 2)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 시간은 수업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강사 구분	보수		참고 사항	
4일 이상 1월 미만 결원 전일제강사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비고에 의하여 근무일 수를 산정하여 일할계산지급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 지급 ○ 기타직 보수에서 지급	
	수당	○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중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3일 이내 결원 시간강사	○ 시간당: 25,000원 - 초과하는 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지급 단기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 (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 해당학교(유치원)에서 지급 ○ 매년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책정	
정원외 일시적 시간강사				
특수교과목 담당강사	○ 전일제강사로 채용 시의 지급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지급 시 학교별 강사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책정하되, 초과분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지급			

- 3)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대체강사는 학교의 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일정액으로 책정하여 운영
 - 4시간 이하 시간당 **25,000원**, 4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시간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강사수당	25,000	50,000	75,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 시간당 **25,000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4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은 고정)
- 4)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하되 전일제강사는 제외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 강사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차주에 1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2) \text{주휴수당액} = \frac{1\text{주총소정근로시간}}{40\text{시간}} \times 8 \times \text{약정시급}$$

3) 기타 지급 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5) 강사는 기간제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담임교사로 발령이 불가하며,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초등학교 1월 미만 결원 대체 강사는 예외)

※ 필요한 경우 여러 사안(우수강사의 채용, 학교여건, 지역설정,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지급

자. **복무**: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3 산학 겸임 교사

가. **임용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

다. **임용권자**: 학교장

라.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마. 임용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복무

-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당직 근무도 하지 않으나, 전문계 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함
 - 2) 학교장과 산업체의 장(개인의 경우 당사자)이 협의하여 정함
 - 3) 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교과를 지도하는 형태와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원외 별도 강사 및 인턴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등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사. 보수: 학교 또는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4 명예 교사

가. 임용사유(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사자격증 소지 불문)

다. 임용권자: 학교장

라. 임용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임용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복무

- 1)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 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비상근 근무)
- 2) 산학겸임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원외 별도 강사 및 인턴교사 등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사. 보수: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III. 계약제교원의 복무 기준

1 당직 및 비상 근무

- 가.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 내용: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2 출장

- 가.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나. 내용

- 1) 학교 규모 등 학교 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 2) 학생지도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되어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 3)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3 겸임 및 순회 근무

-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나. 내용

- 1)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겸임 및 순회 근무 가능
- 2)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4 근무시간

- 가.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0조
나. 내용: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2)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계약서에 명기)

5

휴가

-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정규교사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단, 강사의 경우 휴가는 인정하되 무급)
 다. 휴가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1) 연가

-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준용)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17일

- 연가일수 산정 시 계약기간은 동일교에서 기간 단절없이 근무한 경우 기존 계약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인정(계약개월 수)

- 계약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일괄 부여하고, 계약시작일부터 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 중도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급여에서 환수) 처리함

※ 동일교 4년 근무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재 채용된 기간제 교원의 경우 이전 경력 미산입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text{연가일수} = \frac{\text{계약개월 수}^*}{12(\text{개월})} \times \text{계약기간별 연가 일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

*연가일수 재산정할 경우 등의 계약개월 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 예시

- 6개월 계약: $6/12 \times 11\text{일} = 5.5\text{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6일

- 1년 근무 후, 3개월 연속 계약: $3/12 \times 12\text{일} = 3\text{일}$

- 2년 근무 후, 4개월 16일 연속 계약: $5/12 \times 14\text{일} = 5.8\text{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6일

2) 병가

- 일반병가

-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text{최대 병가 일수} = \frac{\text{계약개월 수(일 단위 절사)}}{12(\text{개월})} \times \text{일반병가 } 60\text{일}$$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 공무상 병가

-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 · 부상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허용 가능
 - 임용권자(학교장)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 여부 확인 필요)
- 3)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산 또는 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 시술 휴가), 제14항(가족돌봄휴가), 제16 항(임신검진휴가), 교원휴가에관한예규 제8조1항(교육활동 침해 피해 특별휴 가), 제3항(학습휴가*)는 정규교원과 동일 적용

*학습휴가는 행정기관(교육지원청 등)에서 근무하는 순회교사에 한해 적용됨.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 6일 이내의 공무상병가는 학교장 승인으로 사용 가능
 -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참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항(가족돌봄 휴가), 교원휴가에관한예규 제8조제3 항(학습휴가)는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및 일수 산정
- ※ 3개월 계약한 교사의 경우
- 가족돌봄휴가(유급) 시간: $(3개월/12개월) \times 16시간 = 4시간$
 - 가족돌봄휴가(무급) 일수: $(3개월/12개월) \times 8일 = 2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학습휴가 일수: $(3개월/12개월) \times 5일 = 1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약개월 수(「교원휴가에관한예규」 시행일(2023.01.20.) 이후부터 산정)는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6

육아휴직

가.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 2025.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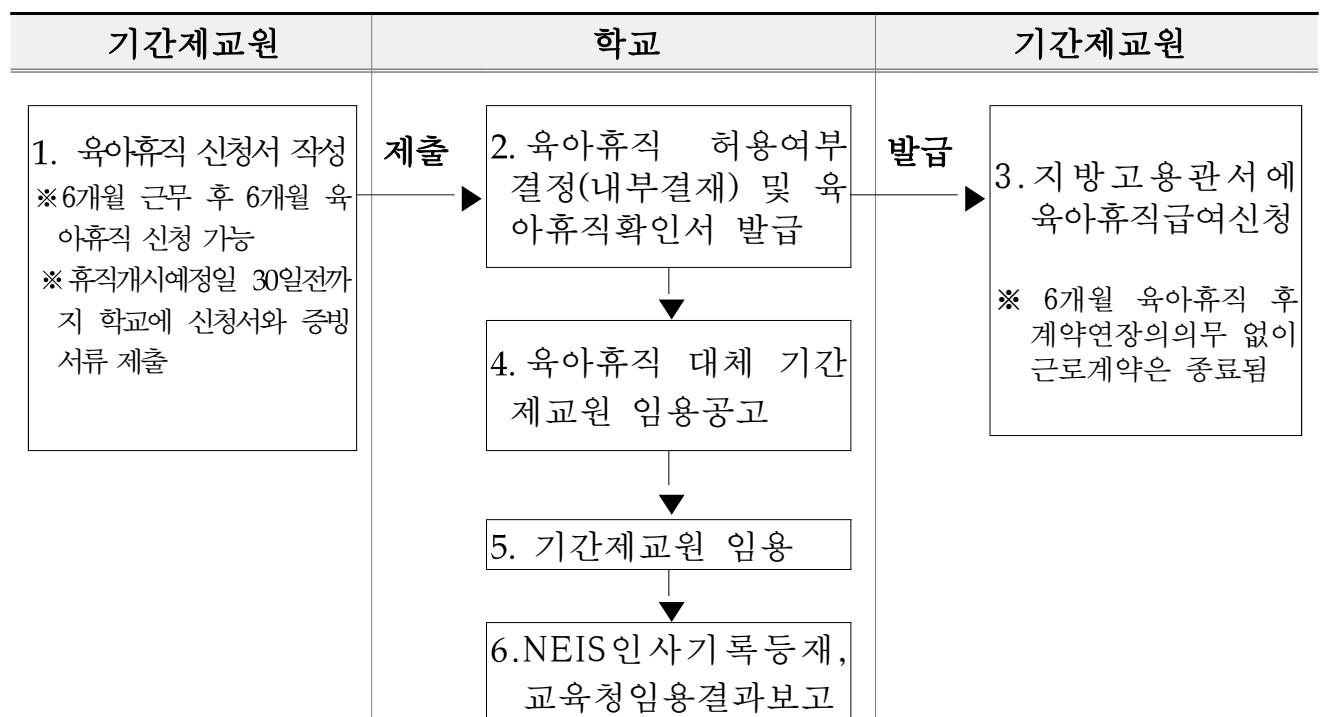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서 제외한다.
- ⑥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휴직대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1)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2)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 3)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다. 육아휴직 절차



라. 휴직 기간

- 1)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2)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3)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의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6개월 단위로 사용 권장 ⇒ 해당 기간제교원은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4)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휴직 불가
- 5)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6)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 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 7)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 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마. 보수 및 경력 인정

- 1) 보수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7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규정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1)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2)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8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규정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9 불체포 특권

가.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기간제교원도 교육에 종사하도록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10 인력풀제 운영

적절한 임용 대상자의 용이한 확보와 임용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도교육청은 인력풀제를 운영하며, 특히 기간제교원 채용의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개발한 나이스기반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된 기간제교원 중에서 복수(2명이상) 면접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11 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가. 6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채용 시 경상북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함
- 나. 채용 절차 및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12 각종 연수 참가

- 가. 관련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 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임용계약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소지 제거)

13 수업결손 방지

결강 등 업무 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 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 결손 방지에 노력하도록 함

14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 가. 기간제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할 시에는 「청탁금지법」 및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행위(교원채용비리 등) 발생 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
- 나. 공립 및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있어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 시기, 고발 비리 범위 등에 대한 세부고발 기준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세부지침」에 따름

15 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기간제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학교나 학교법인은 감사 주기와 관련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비리 행위의 근절을 위해 3년간 정기 감찰 대상 기관으로 지정 · 관리함

IV. 행정 사항

1. 이 지침은 **2025. 2.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행위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 회신 및 법령 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3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회계예산에 책정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V.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예시

1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자료

○○○○학교 공고 제2025 - 00호

○○○○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2025학년도 ○○○○학교 계약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형 내용

가. 인원 및 교과: ○○교과 1명

나. 채용 기간: '25. 3. 1.(수)~'26. 2. 28.(목) (○○개월)

다. 응모 자격 및 지원 자격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 정년, 만62세) 미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만70세까지 응모 가능**
- 자격: 해당 교과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는 자
 -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단, 1차 공개채용 모집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가능)
 -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성비위 관련으로 계약해지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라. 보수 및 복무: 경상북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용 지침”에 의함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1부 (붙임 서식, 사진 첨부, 연락가능한 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다.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면접시험 당일	
최종 합격자	바.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아. 마약류 중독자 여부 판별 결과 통보서 1부(서류유효기간 1년) 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판정일 1년 미만) 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1부 타. 서약서 1부 파.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1부 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최종 합격 후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2. 4 ~ 2025. 2. 7.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 접수처: ○○학교 행정실(본인 직접 제출일 경우)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2025. 2. 12.(수) 14:00이후

다.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2025. 2. 14.(금) 오전 10:00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 계약제교원 지원서 예시

지원서

사진 (3.5cmx4.5cm)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주소			남 / 여
	연락처	(자택) (휴대폰)		
학력사항	학교명	재학기간	졸업 등	전공(학위)
	고등학교	~	졸업/수료	
	대학교	~	졸업/수료	
	대학원	~	졸업/수료	
경력	기간(년월일)		근무처	직종
	~	(년월일)		
교원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면허명	시행기관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학교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채용과목:
- 성명:
- 생년월일:

【작성요령】

1. 자유롭게 기재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휴면명조 13P, 줄간격 160)로 작성

2025.

작성자

(서명)

〈참고자료 4-1〉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예시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계약제교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 관련 자료
수집·이용 목적	채용 및 서류심사
보유·이용 기간	<u>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u>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학교장 귀하

〈참고자료 4-2〉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시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최종합격자용)

계약제교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집·이용 목적	근로계약 체결
보유·이용 기간	<u>계약 종료 후 180일까지</u>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항목	처리 근거
근로계약 체결(채용)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37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 「교육공무원법」제32조 「초중등교육법」제22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5〉 계약제교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문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자료 6〉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예시

※ 반드시 학교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특히 주서 부분)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 [전일제강사]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 / [전일제강사](☞ 택1하여 작성)를 채용하는 기관의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 / [전일제강사](☞ 택1하여 작성)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_____

_____ 학교장

(근로자) 주소: _____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 / [전일제강사](☞ 택1하여 작성)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교사가 조기 복귀하는 경우 그 복귀일 전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 / [전일제강사] (☞ 택1하여 작성)

제5조(호봉 및 보수 지급 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 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일 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한다.
-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⑥ 학교 휴업기간(또는 공휴일)의 보수는 [지급한다] /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택1하여 작성)
-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임용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 가 불가피하게 임용 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사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 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를 정규교사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되,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 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4.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도 계약 해지)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7.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게 된 때
 9. 기타 사회통념상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지급지침에 따른다.

제14조(연수)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개설하는 「법정의무교육(원격)」를 이수하여야 한다.(3개월 이상 계약자)

제15조(평가) “근로자”는 임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기타 채용조건)

-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학교장 [인]

“근로자” : 성명

〈참고자료 7〉 계약제교원(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예시

※ 반드시 학교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특시 주서 부분)

계약제교원(시간강사) 근로계약서

○○○학교장(이하 “사용자” 라 함)과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_____

_____ 학교장

(근로자) 주소: _____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교사가 조귀 복귀하거나, 수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됨)

제3조(채용구분) 시간강사

제4조(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 ① 근무장소: ○○학교 및 관할 장소
- ② 업무내용: ○○교과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로일은 ()요일 ~ ()요일이며, 근로시간은 총()시간이다.
- ② 제①항의 근로일, 근로시간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제6조(임금 등)

- ① (지급형태 및 수준) 시간당 ()원으로 한다.
- ② (지급일) 당월 ()일,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휴일 및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4.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도 계약 해지)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7.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게 된 때
 9. 기타 사회통념상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기타) 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학교장 [인]

“근로자” : 성명 (인)

〈참고자료 8〉 계약제교원 발령문안 예시

가. 결원보충을 위한 일반 기간제 임용

임명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강사)에 임함.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20○○. . . ~ 20○○. . .)

20○○년 월 일

학교장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

임명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강사)에 임함.(교과명)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20○○. . . ~ 20○○. . .)

20○○년 월 일

학교장

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임명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강사)에 임함.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20○○. . . ~ 20○○. . .)

20○○년 월 일

학교장

* 강사 중 초등 교과전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위 양식에 따름

〈참고자료 9〉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자체 점검표 예시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자체 점검표

○○학교

확인자 교장

작성자 교감

연번	점검사항	점검결과		
		미흡	보통	우수
1	임용에 따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자체 기준이나 계획이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2	6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는가?			
4	계약제교원 채용에 따른 발령 대장 등을 비치·활용하고 있는가?			
5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계약제 교사의 명칭, 근무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6	계약제교원 복무기준은 계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가?			
7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가?			
8	계약제교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9	학교장은 계약제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특기 및 조치 사항				

〈참고자료 10〉 마약류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

교원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제 교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

□ 시행 근거 및 결격사유 판별 대상

- (근거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4호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결격사유 판별 대상)
 -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2조의4
 - (산학겸임교사, 명예 교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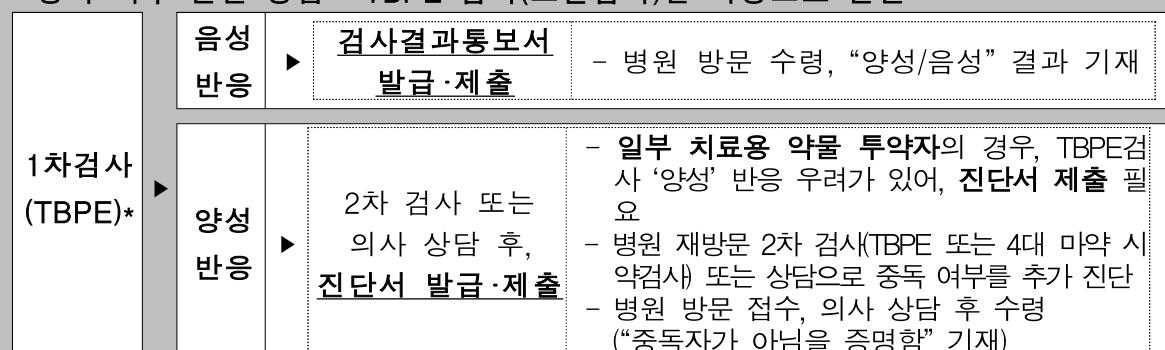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절차

- 계약제 교원이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받고 채용기관에 제출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 기간 상이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

-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서류 유효기간) 1년
 -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 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 검사결과통보서(=마약 검사 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문의 필요

□ 기타 사항

-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나 판별 등 실시는 계약제 교원 채용을 위한 필수 절차
-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서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안)

접수번호

계약제교원 채용용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5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	--

종합판정	
------	--

판정보류 소견	
---------	--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계약제 교원 채용 결격사유 확인 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

※ '검사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건강 진단서

원부대조필
인

병록번호 _____

연번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명							
소견	<p>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p>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 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계약제 교원 채용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input type="checkbox"/> TBPE <input type="checkbox"/> 진단시약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행일 :

의료기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허번호 : 제 _____ 호 의사성명 _____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1> 근무실적 평가 결과 활용 동의서

근무실적 평가 결과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 . . . ~ 20 . . . 까지 ○○○학교 기간제교원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동안,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수행능력,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평가에 동의합니다.

202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학교장 귀하

〈서식 2〉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 예시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예시)					
학교명			성명	성별	
근무기간	202 . . ~ 202 . . .		생년 월일	과목	
순	평 가 요 소		총점	비 고	
1	교직자로서의 태도(10%)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태도가 훌륭함.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30%)			학습지도능력이 뛰어남	
3	학생 생활지도(30%)			학생과의 소통이 잘됨	
4	연수이수(3.1 ~ 2.28.) 및 전문성개발 (15%)			연수 40시간 이수(「법정의무교육(원격)」연수 포함)	
5	담당업무(15%)			업무능력이 우수함	
계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 가. 나. 다. 라. 				
	<p>[작성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점은 각항목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종합점수 기록 2. 종합평가는 개조식으로 서술 작성 3. '연수 이수' 항목은 도교육청 주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증(2년 유효)」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평가의 감점요인으로 한다. 4. 기간제교원(학교)은 연수 이수결과를 인력풀에 등재하여야 한다.(이수증사본 참조) 5. 평가서는 학교에서 보관하되, 그 결과는 기간제교원 인력풀(NEIS시스템)에 등재한다.(연수실적대장 관리) 				

○○고등학교 평가위원: ○○○, ○○○, ○○○, ○○○, ○○○

20 . . .

확인: 학교장 성명 ○○○ (서명)

〈서식 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 과 여권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교육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명칭	○○○○ 학교
이용사무(이용목적)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계약제교원 채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공항목 체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학교장 귀하

〈서식 5〉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보고 서식

1)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제목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보고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6조제3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간제교원 임용사항을 보고합니다.

1) 임용사항

성명 (한자)	생년 월일	성 별	자격 종별	자격증 번호	담당 과목	임용 기간	임용 사유	호봉	퇴직교원 임용 여부	
									퇴직종류 (퇴직일자)	공고 횟수
000 ()	1985. 3.1.		국어 2정	00대 제1234호	국어	2024.3.1. ~2025. 2.28.	교사000의 육아휴직	15		

(※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은 1차 공개채용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가능하며, 공고 횟수 반드시 기재할 것)

2)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구분 임용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여부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진결과

*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진결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붙임 호봉획정표 1부. 끝.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통한 결격사유조회에서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학교장 귀하

〈서식 6-2〉 서약서 예시 2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 「(시간)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학교장 귀하

<서식 7-1> 기간제교원 육아휴직원

육아 휴직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명	홍길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만8세이하(○)
주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년월일 : 19**.**.**.

성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7-2>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복직원 서식 예시

복 직 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
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7-3〉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1. 11. 19.>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 본 사 항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업장명						
	③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 근로자 성명		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 대상자녀의 성명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⑦ 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단축	단축
	⑧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 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 ·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 ·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⑦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5.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7.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 · 일급 ·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 · 일급 · 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8.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식 8-1> 서류심사 평가표 예시

계약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 평가내용

평 가 요 소	
①교원자격증(20점)	◆ 신규임용후보자(20점) ◆ 전공 자격증 소지자(15점)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10점)
②경력(20점)	◆ 학교근무 경력 2년이상(20점) ◆ 학교근무 경력 1년이상 2년미만(15점) ◆ 학교근무 경력 1년미만(10점)
③직무관련 자격증(20점)	◆ 직무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20점) ◆ 직무관련 자격증 1개 소지(15점)
④자기소개서(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보통(35점) ◆ 자기소개서 내용 미흡(30점)

■ 평가 결과

연번	성명	평 가 요 소				합계 (100점)
		①교원자격증 (20점)	②경력 (20점)	③직무관련 자격증(20점)	④자기소개서 (40점)	
1						
2						
3						
4						
5						

평 가 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8-2〉 심사위원 서약서 예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자료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8-3〉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예시

계약제교원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연번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합계	순위
1						
2						
3						
4						
5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20 . . .

○○○학교장

〈서식 8-4〉 수업실연 평가표 예시

계약제교원 수업실연 평가표

과 목			
관리 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10점)	중(8점)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		
소계			
합계		/40점	
심사위원 확인		성명 :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수업실연 진행 요령]

1. 해당 학년(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40~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계약제교원 면접 질문지

■ 질문 내용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질문유형 질문	평가			비고
		상	중	하	
①교직자 의 품성 (20점)	1. 교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직원간의 협조가 잘 안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3. 학교에서 필요시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할 용의가 있습니까?	20	16	12	
②교과 전문성 (20점)	1.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해당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습지도안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4. 이원목적 분류표를 작성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5. 좋은 문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6. 정기고사 실시 후 특정 문항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20	16	12	
③업무수 행 및 생활지 도 (10점)	1.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2. 학생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4.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5.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중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0	8	6	
④근무경 력 및 자격증 활용 (10점)	1. 이전에 학생을 직접 지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3. 선생님을 우리학교에서 채용할 경우, 선생님께서 우리학교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0	8	6	

■ 평가 결과

연 번	성명	생년 월일	평 가 요 소												총괄 평가 합계 (60점)	
			①교직자로서 의 품성			②교과전문성			③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④근무경력 및 자격증 활용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2																

평 가 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서식 8-6> 면접심사 점수 집계표 예시

계약제교원 면접심사 점수 집계표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연번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총괄평가	순위
1						
2						
3						
4						
5						

20 . . .

○○○학교장

〈서식 9〉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등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
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서식 10〉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과 목:

성명:

([]공무원경력, []군복무경력, []유사경력)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소속기관의 장(호봉획정권자) 귀하

[별첨]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요약)

순	경력	주요 내용																																																																																											
1	국·공립 및 사립 학교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지 자격과 학교급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사 경력 포함) 환산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경력사항(근무한 학교)</th><th colspan="6">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에 따른 환산율</th></tr> <tr> <th>학교급</th><th>구분</th><th>유치원</th><th>초등</th><th>중등</th><th>특수 (유치원)</th><th>특수 (초등)</th><th>특수 (중등)</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유치원</td><td>일반학급</td><td>100%</td><td>80%</td><td>80%</td><td>80%</td><td>80%</td><td>80%</td></tr> <tr> <td>학교 내 특수학급</td><td>100%</td><td>80%</td><td>80%</td><td>100%</td><td>80%</td><td>80%</td></tr> <tr> <td rowspan="2">초등학교</td><td>일반학급</td><td>80%</td><td>100%</td><td>80%</td><td>80%</td><td>80%</td><td>80%</td></tr> <tr> <td>학교 내 특수학급</td><td>80%</td><td>100%</td><td>80%</td><td>80%</td><td>100%</td><td>80%</td></tr> <tr> <td rowspan="2">중등학교</td><td>일반학급</td><td>80%</td><td>80%</td><td>100%</td><td>80%</td><td>80%</td><td>80%</td></tr> <tr> <td>학교 내 특수학급</td><td>80%</td><td>80%</td><td>100%</td><td>80%</td><td>80%</td><td>100%</td></tr> <tr> <td rowspan="3">특수학교</td><td>유치원 학급</td><td>80%</td><td>80%</td><td>80%</td><td>100%</td><td>80%</td><td>80%</td></tr> <tr> <td>초등학급</td><td>80%</td><td>80%</td><td>80%</td><td>80%</td><td>100%</td><td>80%</td></tr> <tr> <td>중등 학급 (전공과 포함)</td><td>80%</td><td>80%</td><td>80%</td><td>80%</td><td>80%</td><td>10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청에 임면 보고 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사): 50% <p>※ 관할청 임면 보고 여부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발행한 경력확인서로 확인</p>	경력사항(근무한 학교)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에 따른 환산율						학교급	구분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유치원)	특수 (초등)	특수 (중등)	유치원	일반학급	100%	80%	80%	80%	80%	80%	학교 내 특수학급	100%	80%	80%	100%	80%	80%	초등학교	일반학급	80%	100%	80%	80%	80%	80%	학교 내 특수학급	80%	100%	80%	80%	100%	80%	중등학교	일반학급	80%	80%	100%	80%	80%	80%	학교 내 특수학급	80%	80%	100%	80%	80%	100%	특수학교	유치원 학급	80%	80%	80%	100%	80%	80%	초등학급	80%	80%	80%	80%	100%	80%	중등 학급 (전공과 포함)	80%	80%	80%	80%	80%	100%								
경력사항(근무한 학교)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에 따른 환산율																																																																																											
학교급	구분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유치원)	특수 (초등)	특수 (중등)																																																																																						
유치원	일반학급	100%	80%	80%	80%	80%	80%																																																																																						
	학교 내 특수학급	100%	80%	80%	100%	80%	80%																																																																																						
초등학교	일반학급	80%	100%	80%	80%	80%	80%																																																																																						
	학교 내 특수학급	80%	100%	80%	80%	100%	80%																																																																																						
중등학교	일반학급	80%	80%	100%	80%	80%	80%																																																																																						
	학교 내 특수학급	80%	80%	100%	80%	80%	100%																																																																																						
특수학교	유치원 학급	80%	80%	80%	100%	80%	80%																																																																																						
	초등학급	80%	80%	80%	80%	100%	80%																																																																																						
	중등 학급 (전공과 포함)	80%	80%	80%	80%	80%	100%																																																																																						
2	학력 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근무 경력 (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산율: 100% 이내 (1989. 2. 28. 이후 경력 100%, 1989. 2. 28. 이전 경력 50%) 관할청에 인가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과 한국학교 현황 자료 확인 (해당 연도) 																																																																																											
3	교원 외의 공무원 근무 경력 (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방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 포함) 100%(세부 내용 반드시 확인) 시간선택제 <u>전환</u> 공무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하: 10할 인정 1년 초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 <p>※ 시간선택제 <u>전환</u>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u>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전부 인정</u></p>																																																																																											
4	유·초·중 등 학교 강사 등 (3할~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전일제, 시간, 영어회화전문, 스포츠 등): 30% ~ 100% 환산율=(주당 실 근무시간)/(정규 교원 주당 근무시간) <u>※ 근무시간이 주 12시간 미만이면 최저 환산율 적용: 30%</u> 소지 자격과 학교급 불일치할 경우, 계산된 환산율의 80% 적용 <u>※ 단, 80% 환산율을 적용했을 경우 30% 이하면 30% 적용</u> 강사 경력 기간이 중복될 경우는 기간별로 시수를 합산하여 경력환산율 적용 																																																																																											
5	대학 시간강사 경력 (5할~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산율: 5할~10할(주당 수업시수 기준) 비상근 교수(겸임교수,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수 등)도 적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강의 경력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대학 및 대학원 소속의 부설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센터 등의 강의(일반인 대상) 경력 미인정(강사 경력이 아닌 기타 경력으로 인정)</u> 대학 시간강사 경력 기간이 중복될 경우 기간별로 시수 합산하여 계산 <u>※ 대학교와 유·초·중 시간강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경력 환산율을 계산하여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u> 																																																																																											

순	경력	주요 내용																							
6	연구원 및 조교 경력 (10할 이내) (P. 32 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산율: 100% 이내 •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대학·대학원의 부속시설: 정원 내 유급으로 근무한 경력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제 참여한 경우는 미인정) • 조교 경력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기관</th> <th>직종</th> <th>채용 형태</th> <th>환산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립대학(전문대학)</td> <td>행정조교</td> <td>계약직</td> <td>50% 이내</td> <td></td> </tr> <tr> <td rowspan="2">국·공립대(전문대학)</td> <td rowspan="2">행정조교</td> <td>교육공무원(정원 내)</td> <td>100% 이내</td> <td>공무원연금 가입 사실 등으로 확인 가능</td> </tr> <tr> <td>계약직(정원 외)</td> <td>50% 이내</td> <td></td> </tr> <tr> <td>국공사립대학(대학원)</td> <td>연구조교</td> <td></td> <td>100% 이내</td> <td></td> </tr> </tbody> </table>	근무 기관	직종	채용 형태	환산율	비고	사립대학(전문대학)	행정조교	계약직	50% 이내		국·공립대(전문대학)	행정조교	교육공무원(정원 내)	100% 이내	공무원연금 가입 사실 등으로 확인 가능	계약직(정원 외)	50% 이내		국공사립대학(대학원)	연구조교		100% 이내	
근무 기관	직종	채용 형태	환산율	비고																					
사립대학(전문대학)	행정조교	계약직	50% 이내																						
국·공립대(전문대학)	행정조교	교육공무원(정원 내)	100% 이내	공무원연금 가입 사실 등으로 확인 가능																					
		계약직(정원 외)	50% 이내																						
국공사립대학(대학원)	연구조교		100% 이내																						
7	대학원 학위취득 경력 (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산율: 100% (※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수료한 경우: 미인정) • 인정 기간: (석사) 대학원 학칙상 최저 수업연한 이내 실제 수학 기간 (박사) 3년 이내 실제 수학 기간 • 계절학기제 대학원(6학기, 3년): 2년 이내 인정 단, 수학 기간 3년 이내 타 경력과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두 개 이상의 학위취득 경력은 각각 인정(100%) • 외국 학위 취득 경력: 학위 수여증과 성적증명서의 공증본이 있는 경우 인정(영사관) - 소속 장관이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대학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실제 수학 기간이 최저 수업연한보다 짧을 경우, 실제 수학 기간만 인정 (성적증명서 등 확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근무 경력 (5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산율: 50% 이내 • 인정 요건: 사실상 공무(3개월 이상 근무) 수행 (35페이지 ①~④ 적용) •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8 1	교육공무직원 경력 (8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산율: 50% ~ 80% 이내 • 인정 요건: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경력 (35페이지 ⑤ 적용) •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80% 이내 인정 추가 요건: 업무 분야(8개 직종)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 경력 																							
9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 (5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참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p>* 인정 대상 경력이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어 있음.</p> <p>-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구분 필요</p>																							

순	경력	주요 내용																												
10	학원 강사 근무 경력 (5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에 신고된 학원 강사 또는 교습소의 교습자 환산율: 50% 이내 <u>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u> 경우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교육감에 신고되지 않은 학원 강사 또는 교습소의 교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증명자료 제출: 환산율 30% 이내 <p>※ 교육장이 발행한 <u>학원강사사실확인서는 신고된 학원의 강사 여부 확인용</u>이며, 경력 인정 여부는 해당 학원의 경력 증명서 및 전력 조회(교습자 제외), 경력증명 및 전력 조회 등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 증명자료를 받아 <u>호봉경력 평가 심의회</u>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p> <p>• 강사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장 및 개인과의교습자 경력은 미인정</p>																												
11	회사 근무 경력 (4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산율: 40% 이내(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30% 이내(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u>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u> 경우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경력 미인정: 회사 대표, 사장, 점원, 보험판매원, 외판원 등 																												
12	법인, 개인회사, 학습지 지도교사 등 근무 경력 (3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산율: 30% 이내 <u>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u> 경우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학습지 회사의 방문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30% 이내 <p>※ 단, 학습지 <u>(주식)회사</u>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0% 이내</p>																												
13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산율: 100% 이내(정규직: 100% 이내, 비정규직(계약직): 80% 이내)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 과목별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상향 인정 전력 조회를 통해 <u>호봉경력 평가 심의회</u>에서 상향 인정 엄격히 적용 																												
14	병원 근무 경력 (10할 이내)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종</th><th>소 지 자 격</th><th>병원 종류</th><th>정규직 여부</th><th>경력 환산율</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간호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등</td><td rowspan="5">보 건 교 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상법에 의한 회사 등 </td><td>정규직</td><td>100% 이내</td><td rowspan="5">상향 인정</td></tr> <tr> <td>비정규직</td><td>80% 이내</td></tr> <tr> <td>정규직</td><td>90% 이내</td></tr> <tr> <td>비정규직</td><td>70% 이내</td></tr> <tr> <td rowspan="2">보 건 교 사 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병원 의료법인 아닌 종합병원 </td><td rowspan="2">정규직 비정규직</td><td rowspan="2">30% 이내</td></tr> <tr> <td>그 밖 의 경 력</td></tr> </tbody> </table>						직종	소 지 자 격	병원 종류	정규직 여부	경력 환산율	비고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등	보 건 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상법에 의한 회사 등 	정규직	100% 이내	상향 인정	비정규직	80% 이내	정규직	90% 이내	비정규직	70% 이내	보 건 교 사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병원 의료법인 아닌 종합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30% 이내	그 밖 의 경 력
직종	소 지 자 격	병원 종류	정규직 여부	경력 환산율	비고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등	보 건 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상법에 의한 회사 등 	정규직	100% 이내	상향 인정																									
		비정규직	80% 이내																											
		정규직	90% 이내																											
		비정규직	70% 이내																											
		보 건 교 사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병원 의료법인 아닌 종합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30% 이내																								
그 밖 의 경 력																														
15	학령과 경력의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과 경력 중 하나만 산입, 학력 기간은 학기 단위로 계산 [1학기]: 3. 1.~8. 31., 2학기]: 9. 1.~2. 28.(말일)] 실제 수학 기간이 법정 수학 연한을 초과할 경우 <u>법정 수학 연한을 학령기간(수학 기간)으로 계산</u> 독학사(2. 28.), 학점은행제(2. 28. 또는 8. 31.) 학위 취득 시점부터 역산 <p>※ 유의 사항: <u>학령으로의 인정한 기간을 다른 경력 중복으로 인정한 경우가 많음</u></p>																												
16	경력과 경력의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u>학교 강사 근무 경력: 학교별 실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주 근무시간으로 인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 중학교와 초등학교, 대학교와 전문대학 미인정: 중학교와 대학교(중학교와 대학교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서식 11〉 계약 해지(해고) 확인서

중도 계약 해지(해고)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	기간제교사 ○○교과
계약기간	
해지(해고)일	2024. 7. 22. (최종근로일 다음날)
계약 해지(해고) 사유	위 교사는 ... (구체적으로 작성) · ·

20 년 월 일

○○○○학교장(직인)

※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도 가능함.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 시 공문으로 즉시 보고(해임일로부터 5일이내)

3 계약제교원 4세대 나이스 업무 처리

인력풀 검색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뉴 : [계약제교원-인력풀관리-인력풀검색조회] <p>※ 기간제교사인력풀 제도: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필요시 등재된 인력풀내에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원활이 되도록 인력DB를 관리 운영</p> <p>-> 채용처리</p>
계약제교원 신규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뉴 : [계약제교원-인사기록관리-신규등록(계약제교원)] <p>○ 신규로 채용했을 때 인사기록을 새로 등록</p> <p>○ 최초임용일은 계약시작일을 입력</p> <p>※ 2019년부터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은 정규교원처럼 인사자료를 모두 입력 (개인신상, 병역, 임용전경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학교의 경력은 임용전경력에 기록 - 계약제교원 인사기록카드 자료전송으로 전임교에서 등록한 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음. <p>※ 중등과-5009(2019. 2. 26.)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일부개정 (2019. 2. 18.) 안내 참고</p>
인사기록 (계약제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뉴 : [계약제교원-인사기록관리-인사기록(계약제교원)] <p>○ 계약제교원의 인사기록을 등록, 수정, 삭제</p> <p>○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연계재전송 버튼 클릭</p>
퇴직예정자관리 (계약제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뉴 : [계약제교원-인사기록관리-퇴직예정자관리(계약제교원)] <p>○ 계약제교원의 퇴직예정일(계약종료일)을 등록, 수정, 삭제</p> <p>○ 퇴직예정일이 등록되면 퇴직예정증명원 발급 가능</p>
계약제교원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뉴 : [계약제교원-인사기록관리-퇴직처리(계약제교원)] <p>○ 계약직 교원의 퇴직 또는 퇴직 취소</p> <p>※ 계약만료시 반드시 이 메뉴를 통해 퇴직처리(만료일 즉시)</p>

계약제교원 - 신규등록

신규등록(계약제교원)
교원인사
계약제교원
인사기록관리
신규등록(계약제교원)
시작
종료

*성명
*주민번호
조회하기

*성별
*기관
*소속기관

*기관부서
*부서별
개인화한원본문양의보

*교원구분
*교급
*급여구분

*교급
*교급
*급여구분

*교급수당
*교급수당
*급여수당

*기초임용일
*기초임용일
*기초임용일

*기초임용일
*기초임용일
*기초임용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초중구분, 교원구분, 공사립구분, 계급, 직급, 직위

② 호봉 : 특정한 호봉 (계약기간 중 호봉 고정, 1정 자격취득시만 재획정 가능)

③ 계약제구분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전일제강사, 시간제기간제교사 중 선택

④ 근무년수 : 특정한 근무년수를 입력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에 반영됨

⑤ 보직구분 : 보직구분(교사, 담임, 부장교사, 부장담임 등)에 따라 급여에 보직수당이 반영

⑥ 최초임용일, 현부서임용일 : 채용계약서에 기입한 계약기간 중 계약시작일을 입력

⑦ 재직상태 : 재직으로 입력 (※ 신규임용후보로 저장할 경우 시스템 사용 안됨)

⑧ 임용과목 : 현황표/조직표상의 과목 분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 자격증표시과목

70 | 경상북도교육청

2 나이스 교원인사 업무

계약제교원 - 퇴직예정자등록

퇴직예정자관리(계약제교원)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

① 성명
②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
③ 신청일(입력일)
④ 퇴직예정년월일
⑤ 퇴직사유
⑥ 입력 자료 저장

① ② 성명으로 조회 후 대상자 선택[현재 재직중인 계약제 교원만 조회 됨]
③ 신청일(입력일) : 퇴직예정자등록 일자 입력
④ 퇴직예정년월일: 퇴직예정일자 입력[계약만료일자]
⑤ 퇴직사유: 의원면직, 계약해지, 계약만료, 사망 중에서 선택
⑥ 입력 자료 저장

2 나이스 교원인사 업무

계약제교원 - 퇴직처리

퇴직처리(계약제교원)

① 퇴직예정일
② 퇴직일
③ 퇴직처리 대상자
④ 계약제교원 상세
⑤ 퇴직처리 취소: 재직상태가 퇴직인 계약제교원을 체크하여 퇴직처리취소 버튼 클릭
⑥ 퇴직정보 수정: 재직상태가 퇴직인 계약제교원을 체크하여 퇴직사유, 퇴직일자 수정 후 저장

① ② 퇴직예정일자 기간 선택 후 대상자 조회[퇴직예정자 등록된 내역 조회 됨]
③ 퇴직처리 할 대상자를 체크
④ 아래의 계약제교원 상세 정보 확인 후
⑤ 퇴직일자 입력
⑥ 퇴직처리 버튼 클릭[*퇴직과 동시에 시스템 사용 중지 및 권한 삭제됨]

상북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계약연장

나이스 교원인사 일정

계약연장시

[기존 인사기록 재사용 가능]

- 계약 연장은 공백기간이 없구 계약직구분이 동일한 경우만 가능

※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 처리 후 신규등록으로 관리

1) 퇴직예정년월일을 연장계약한 날짜로 수정

[교원인사-계약제교원-인사기록관리-퇴직예정자관리(계약제교원)]

2) 연장계약 시 확정된 호봉으로 승급기록 추가 및 근무사항 반영

[교원인사-계약제교원-인사기록관리-인사기록(계약제교원)]

-승급기록]

※ 계약만료 시까지 확정호봉유지(정기승급은 없음)

※ 1정 자격 취득시 재확정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자료전송

나이스 교원인사 일정

자료전송

- 이전 근무 기관에서 등록한 자료를 현재 근무 기관으로 전송 받아 입력 가능

계약제교원 자료전송							
2023-09-14							
1) 현 근무자에서 처리		2) 전 근무자에서 처리		선택			
선택	요청내용	선택	주민번호	직급	계약직구분	오정상태	요정일
<input type="checkbox"/>	1. 계약	<input type="checkbox"/>	-1*****	중고등학교교사	기간제교사	오정	2023-08-16
<input type="checkbox"/>	2. 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고등학교교사	기간제교사	오정	2023-08-16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3*****	중고등학교교사	기간제교사	오정	2023-08-16

계약제교원의 자료 전송 범위(2019. 2. 기능개선)

개인신상, 범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벌,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의 자료

! 육청